

경운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진로취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센터는 진로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각 기능간 연계성, 체계성 확립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발견하고,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②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 기회를 발굴·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③ 다양한 창업강좌 콘텐츠 제공, 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및 창업동아리 발굴 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구성)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③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로취창업교과목 개발 및 개선
2. 진로취창업교과목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
3.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진로취창업 관련 각종 진단 및 검사 업무
5. 진로취창업 현황 통계 조사, 진로 정보 및 고용동향 등 취창업 지표 관련 업무
6.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편성 및 성과분석 업무
7.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학생 요구도조사 및 산업체 수요조사
8. 기타 진로취창업과 관련되는 업무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7인 내·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결과
 - 2. 운영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센터 운영
 - 4.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·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
 - 5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6조(미래진로설계지원위원회) ① 재학생들의 진로취창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.

- ② 위원장은 진로취창업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
-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④ 미래진로설계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
 - 1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사항
 - 2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학생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- 5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기타에 관한 사항
- ⑤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관 및 시행부서(센터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진로취창업지원센터
 - 2.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
 - 3. 현장실습지원센터

4. 국제처
5. 기타 진로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
- ⑥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1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
 2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 보고
 3.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

제4장 기타

제7조(기타규정)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<2025.10.01.>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